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양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원과 관련된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1절 일반전형

제2조(입학전형)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전형 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3조(지원전공분야) 본 대학원의 지원 전공분야는 동일계열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서류) ① 본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6.>

1.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출신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전학년 평점평균이 기재된 것) 1부
 4. 장학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5.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
- ② 이미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전형 방법) 본 대학원의 일반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1.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대학 및 대학원 학업성적, 경력, 자격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면접심사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식과 응용능력, 적성과 인성, 지원동기 등을 심사 한다. <개정 2025.05.06.>

제5조의2(전형업무 회피 배제) ① 대학원 입학 담당 부서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시 전 회피·배제 관련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② 자녀 및 친인척 등이 본교 입학 전형에 지원하는 교직원은 이 사실을 입학처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교직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대학원 전형업무에서 배제된다.

- ③ 회피 신고를 하지 않고 학생선발 평가에 참여하여 부정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본교 「교원인사 규정」 및 「일반직원인사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④ 회피를 위한 자진신고 대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업무 배제 대상은 연말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등 시스템 및 서류 대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으로 한다.

<신설 2025.05.06.>

제6조(입학사정) 대학원위원회는 각 전공의 입학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사정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7조(학력조회)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 학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절 특별전형

제8조(목적) <삭제 2025.05.06.>

제9조(전형범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지원자격) <삭제 2025.05.06.>

제11조(준용규정) 지원서류, 입학전형방법 및 입학사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제3절 재입학 및 편입학

- 제12조(재입학)**
- ① 본 대학원에서 제적되거나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학기 또는 자퇴한 학기부터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 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② 영구수료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 요청을 접수해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재입학은 정원 중의 여석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④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편입학) ① 대학원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다의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② 편입학 전형은 대학 및 대학원 학업성적, 동일 학위과정의 이수과목과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

제3장 등록

제14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 ② 수업연한 내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정규등록을 해야 한다.
- ③ 학칙 제18조의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추가등록은 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2분의 1을, 3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등록으로 한다.
- ④ 각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수료 직후 학기부터 학위 취득 시까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석사학위과정은 최대 2회,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최대 6회의 연구등록금을 연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등록금 납부기간 만료 이후 학위논문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연구등록 학기에 논문지도과목 이외의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금의 반환) 등록을 완료하고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신입생, 편입생 또는 재학생에게는 본교 학부 학칙 제58조를 준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4장 휴학 및 복학

제16조(휴학절차) 학칙 제14조에 의한 휴학(입대휴학, 가사휴학, 병가휴학을 포함)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하고자 하는 종류의 휴학원서에 다음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1. 입대휴학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사본은 원본과 대조 필 된 것)
2. 질병에 의한 의병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3. 출산, 해외근무, 천재지변 등에 의한 휴학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제17조(복학절차)** ①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원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5.06.>
- ②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대학원장으로부터 휴학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5.06.>
- ③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복학”이라 한다) 복학한다.

제5장 교육과정, 수강신청, 성적

제18조(교육과정 및 교과목)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은 주임교수의 발의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제19조(과정 이수학점)** ①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별표 1과 같다.
- ② 학칙 제35조의 수료학점의 1/2에 해당하는 학점은 소속 전공에서 취득해야 한다.
- ③ 본 대학원 타 전공 또는 본교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타 전공 수강신청 기간에 대학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과목은 소속 전공과 유사한 전공 과목이거나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2.28.>

- 제20조(선수과목)** ① 학칙 제25조의 선수과목은 해당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과목으로 한다.
- ② 선수과목의 이수는 학기당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수료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05.06.>
- ③ 입학 전의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서 주임교수가 선수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의 이수는 면제될 수 있다.

- 제21조(교과목 수업계획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학기가 개시되기 전 대학원 교학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운영플랫폼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수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과목정보 : 과목명, 학수번호, 이수구분, 개설전공, 교강사명, 수업개요, 수업목표, 교재, 수업진행방법 및 특이사항
 2. 평가기준 :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토론, 퀴즈 및 설문 등의 반영비율
 3. 강의계획 : 주차별 강의의 주제, 내용, 평가계획

③ 평가 및 주차별 수업과 수업계획서의 내용은 상호일치 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 후에는 수업계획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2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 전 지정된 기간 내 온라인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하여야 한다.

② 타 전공 또는 본교 전문대학원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업운영교강사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2.28.>

제23조(수강신청 과목변경) ① 수강신청 과목변경은 온라인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교과목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을 인정한다.

1. 대학원 교무 수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설강교과목을 폐강 또는 유사교과목과 통폐합 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학원장의 수강교과목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교과목 변경신청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재수강) 성적등급이 A이하인 과목은 동일한 학수번호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제25조(교과목의 폐강) 수강신청자가 5명 미만인 교과목의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 학기의 설강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성적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 출석 등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졸업논문, 실험실습 등 특수 과목의 성적은 별도로 평가기준을 둘 수 있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 개강 후 일정기간 내에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항목으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수업참여도 등을 둘 수 있다.

④ 학기 개시 4주 이후 성적 평가기준 변경은 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상대평가 및 평점 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5.06.>

제27조(출석) ① 온라인출석이라 함은 학생이 본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ID를 가지고 운영플랫폼에서 해당 차시에 제공된 강의콘텐츠의 전체 페이지를 수강하거나 또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공식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 ② 오프라인출석이라 함은 해당 과목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제28조(출석인정기간) 출석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개강일부터 학사일정에 따른 출석인정 마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할 때 또는 해당 과목 교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9조(출석인정 및 절차)** ① 온라인출석의 경우 각 차시에 오픈된 온라인 강의 학점 분량 동영상의 50% 이상을 수강해야 해당 차시를 수강한 것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기 과목당 전체 수업의 4분의 3 이상 출석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 ② 오프라인출석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공식적인 학습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출석이 인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오프라인출석수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으로 하여금 온라인출석, 교과목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과제물과 오프라인출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출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5.05.06.>

- 제30조(성적정정 및 취소)** ① 학생이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교과목 담당교수가 재확인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확인신청기간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③ 재확인신청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성적의 정정 요청이 불가하다. 다만, 채점오류나 전산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재확인신청 기간 이후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성적확정 이후 성적정정은 석차에 반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기취득하여 인정된 학점이라도 추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학점인정

- 제31조(학점의 특별 인정)** ①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이 본교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 사정을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자 중 석사과정과 동일 전공 분야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졸업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본교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

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초과로 이수한 전공과목에 한한다.

제32조(편입학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전공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편입생의 인정학점 지정은 편입된 학기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7장 학위수여, 자격시험, 학위논문

제1절 학위수여

제33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본 대학원에서 각 과정별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가 지정한 논문대체학점을 추가 취득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05.06.>

③ 제2항의 논문대체 학점은 6학점 이상으로 하며 논문대체 교과목의 개설 및 학점이수 시기는 대학원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2절 외국어 시험

제34조(외국어 시험) ① 석사,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중 1과목으로 하며 학위청구논문제출 전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석사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③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공인어학시험에서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모든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2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휴학생 및 영구수료자는 신청하지 못한다.

제36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 학년도에 학기별로 1회씩 실시한다.

제38조(출제위원) 대학원장은 각 과목마다 1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게 한다.

제39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3절 종합시험

제40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및 심화지식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소정의 시험과목으로 시행한다.

②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 학기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행한다.

③ 박사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석사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제41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5.02.28., 2025.05.06.>

1.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선수과목 해당자)를 완료한 자
2. 박사학위과정에서 졸업 교과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 과목 이수(선수과목 해당자)를 완료한자 <개정 2025.02.28.>
3.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졸업 교과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선수과목 해당자)를 완료한 자 <개정 2025.02.28.>

제42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 학년도에 학기별로 1회씩 실시한다.

제44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해당 전공 대학원 강의 담당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5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4절 학위논문

제46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의무)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제1항의 자와 공동으로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1. 본교 명예교수

2. 타 기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소속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2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 학생을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을 3년 이상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5.02.28.>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8조(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운영)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 제목의 선정 및 논문의 작성 시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은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에 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인,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5인의 논문지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지도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공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논문지도교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2.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논문지도를 할 수 없는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 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석사 1개 학기 이상, 박사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이 같은 동일전공 교수가 논문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논문지도 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제50조(학위논문제출 자격) 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6.>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 교과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개정 2025.02.28.>
4. 학위청구 논문제출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25.02.28.>
6. 논문지도교수가 지정한 연구방법론 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25.02.28.>
②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는 박사학위 및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05.06.>
 1.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3.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 교과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다만, 석·박사 학위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 교과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개정 2025.02.28.>
 4. 학위청구 논문제출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25.02.28.>
 6. 논문지도교수가 지정한 연구방법론 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25.02.28.>
 7. 학술지 게재 요건을 충족한 자 <신설 2025.02.28.>

제5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는 3월부터 5월 중, 9월부터 11월 중으로 한다.

제52조(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7년, 박사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은 9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재입학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3조(논문 작성)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제54조(논지) 각 학위과정에서 논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논문: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과 주제의 학술적 타당성이 조직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논문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전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55조(학위논문체제) 논문 작성은 별도의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법에 따른다.

제56조(학위논문의 내용 및 순서) 학위청구 논문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속표지
2. 인준서
3. 차례
4. 국문요약문(서문)
5. 영문요약문
6. 본문
7. 참고서적 목록
8. 부록 기타

제57조(학위논문의 규격) 학위청구 논문규격은 다음의 각호의 규격에 따른다.

1. 표지 - 규격1호
2. 책 등 - 규격2호
3. 속표지 - 규격3호
4. 인준서 - 규격4호
5. 차례 - 규격5호
6. 국문요약문 - 규격6호
7. 영문요약문 - 규격7호
8. 본문 - 규격8호

제58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부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59조(논문편제)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본교 대학원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제60조(심사청구)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1조(논문심사위원회)**
- ① 심사위원은 전공주임교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7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 ③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하며, 심사위원 5인 중 1인 내지 2인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진행을 주재하고 의결에 있어서는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2조(심사기간) <삭제 2025.05.06.>

- 제63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는 본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 심사는 논문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의 유무를 판정한다.
④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64조(논문평가) 학위논문의 심사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제65조(학위 논문심사 횟수와 기간) 학위과정 논문심사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5.05.06., 개정 2025.05.06.>

제66조(재심사) 학위논문 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논문의 통과) 논문심사는 석사의 경우 3분의 2 이상, 박사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8조(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수당 지급 기준) 논문심사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출제·채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별표3에 따른다.

제8장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제71조(정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논문 제출, 석사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72조(선발인원)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3조(과정탈락자, 중도포기자 및 통합과정 전환자에 대한 조치)** ① 과정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본교 대학원 학칙 제36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킨다.
- ② 전 항의 여석은 석사학위 졸업자 중에서 박사과정생 또는 석사학위 과정 중 통합과정 전환자로 충원할 수 있다.
- ③ 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본교 대학원 학칙 제36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의 논문제출기한 및 연구등록금 납부 횟수는 석사과정의 기준을 따른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 ⑥ 석사과정 중 통합과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제74조(박사과정인정)** ① 통합과정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 ② 박사과정 인정자에 대한 학적관계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제75조(전문연구요원 편입) 통합과정 학생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은 관계 법규에 따르되, 석사학위 취득학점인 24학점을 이수하고 4기 등록을 필해야한다.

제9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76조(공개강좌) 공개강좌의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77조(연구과정 지원자격) 각 과정 연구과정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정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78조(연구과정의 수업 연한) ①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며,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9조(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목) ①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80조(연구과정 보고서의 작성) 연구과정의 수료요건으로 지정된 과제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종은 4.6배판(18.8cm×25.7cm)
2. 지질은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3. 인쇄방식은 전산인쇄로 한다(양면인쇄도 가능)
4. 표지는 소프트 카바
5. 표지 인쇄양식은 흑색(석사학위논문에 준함)

②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례
2. 본문(서론, 본론, 결론)
3. 참고서적 목록
4. 부록 기타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02.28.)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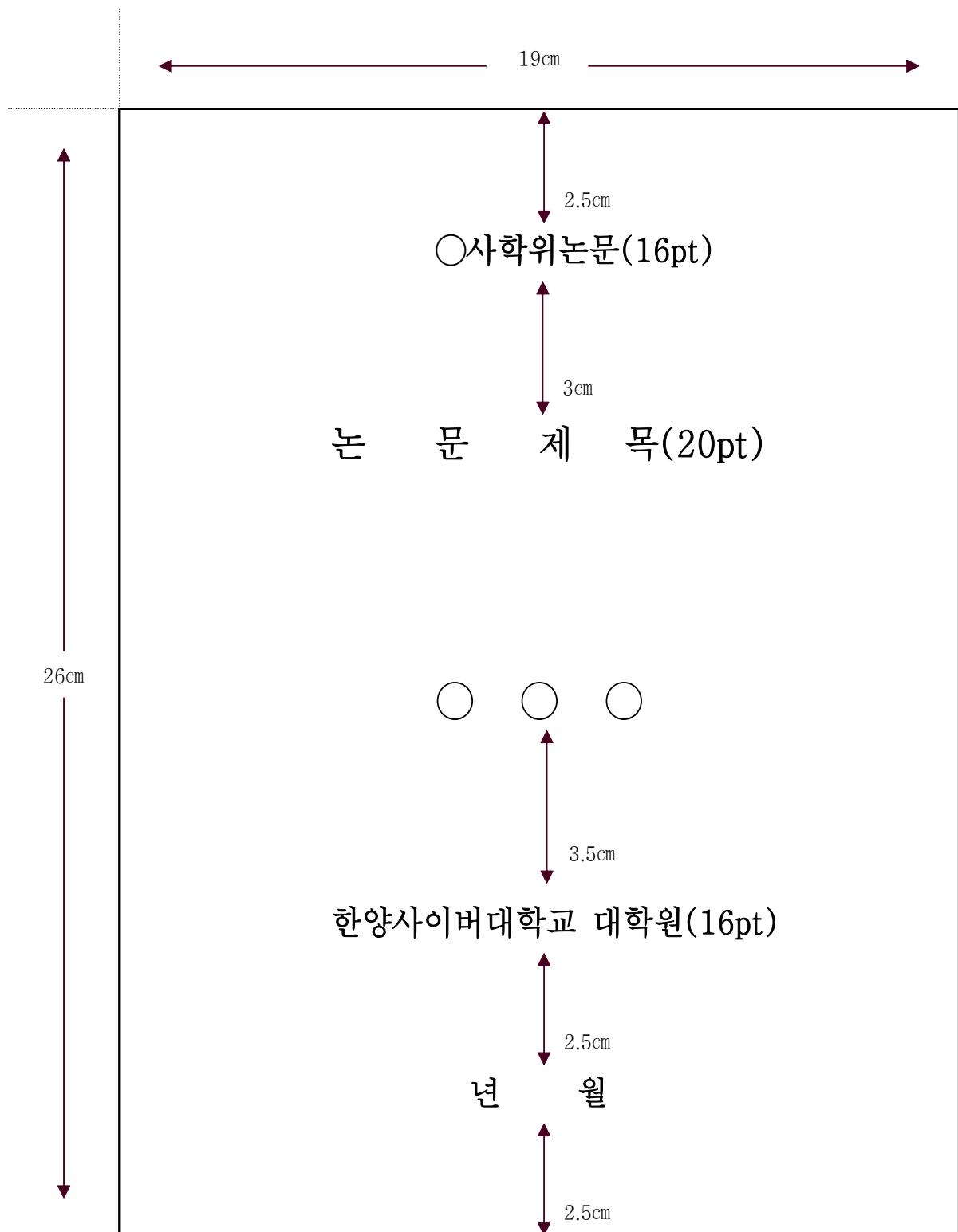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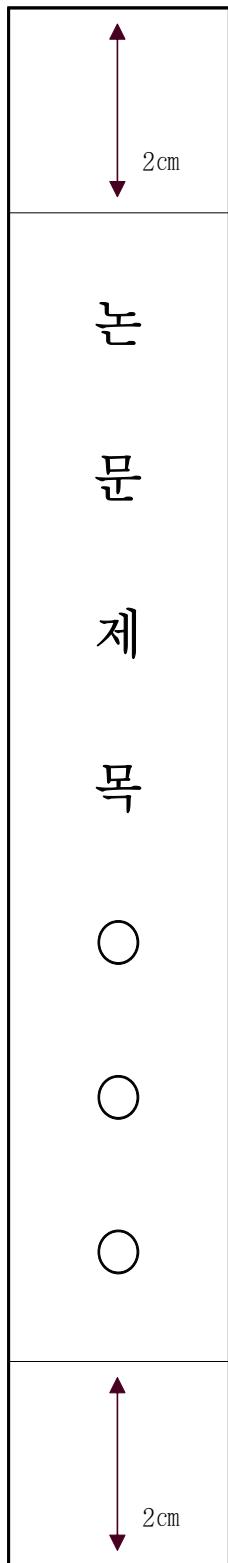
대학원명	학위과정	최소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학점	24학점	30학점
		논문	6학점	
	박사학위과정	교과학점	24학점	33학점
		논문	9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교과학점	48학점	57학점
		논문	9학점	

[별표 2] 대학원 논문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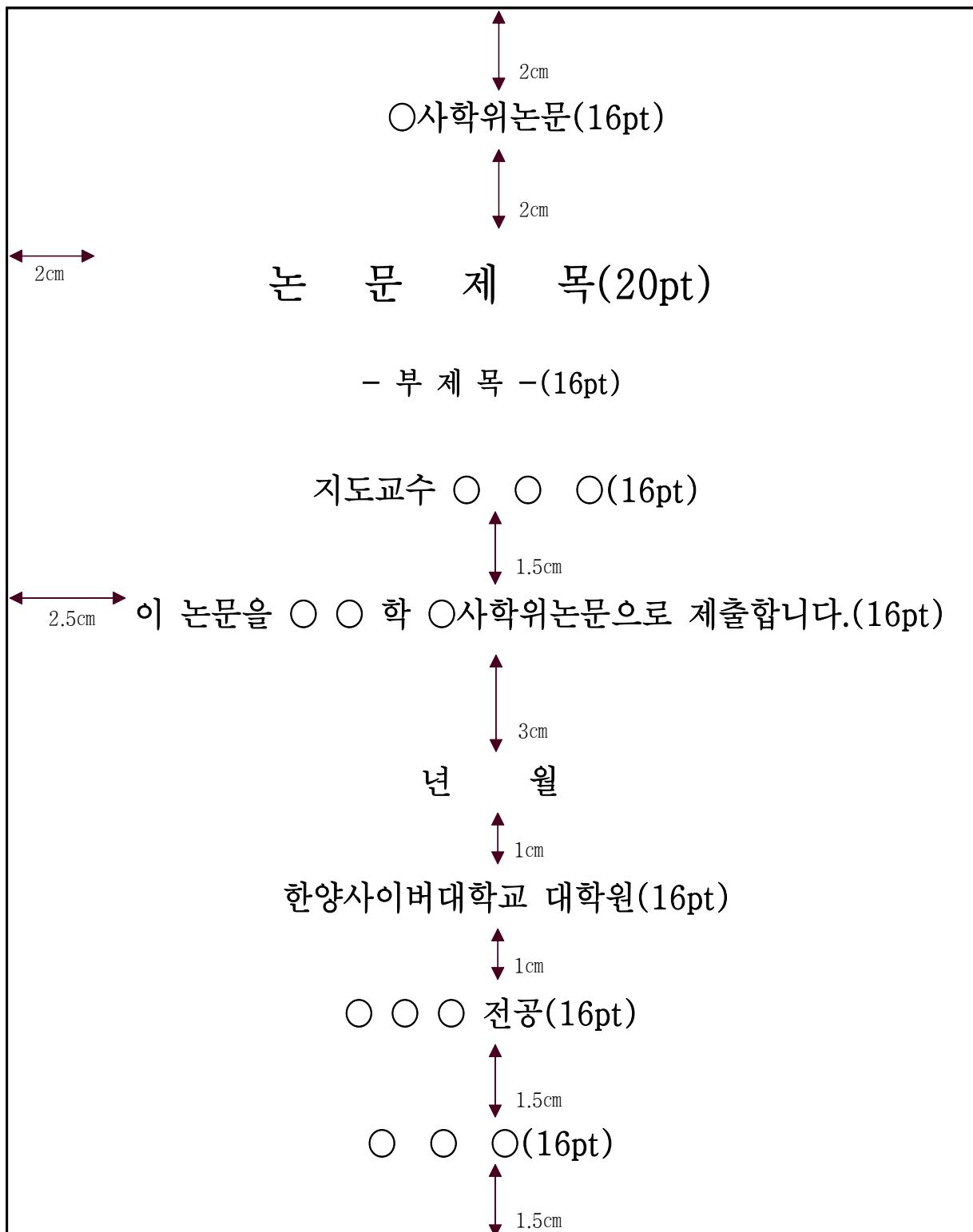
(1) 규격 1호(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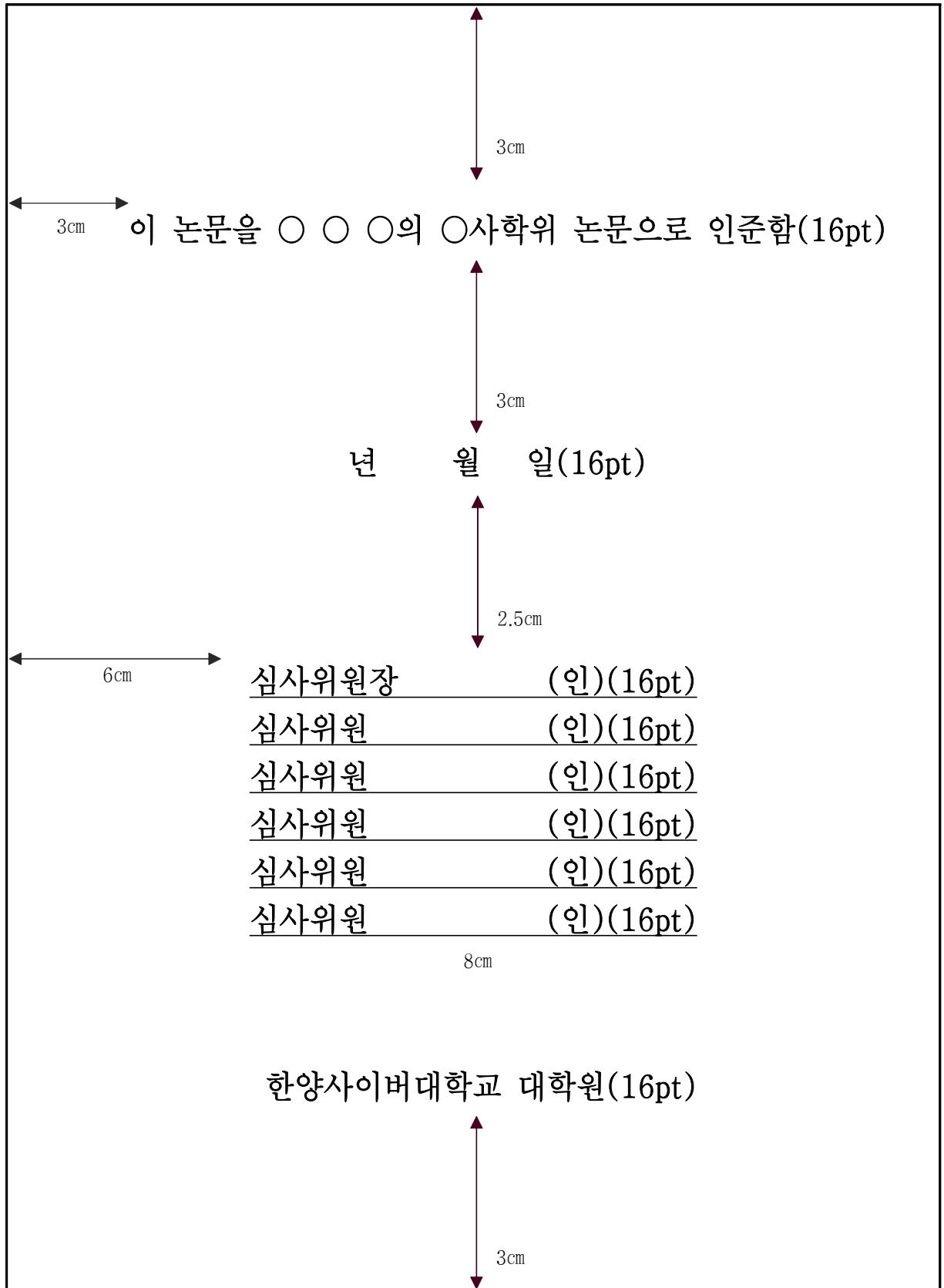
(2) 규격 2호(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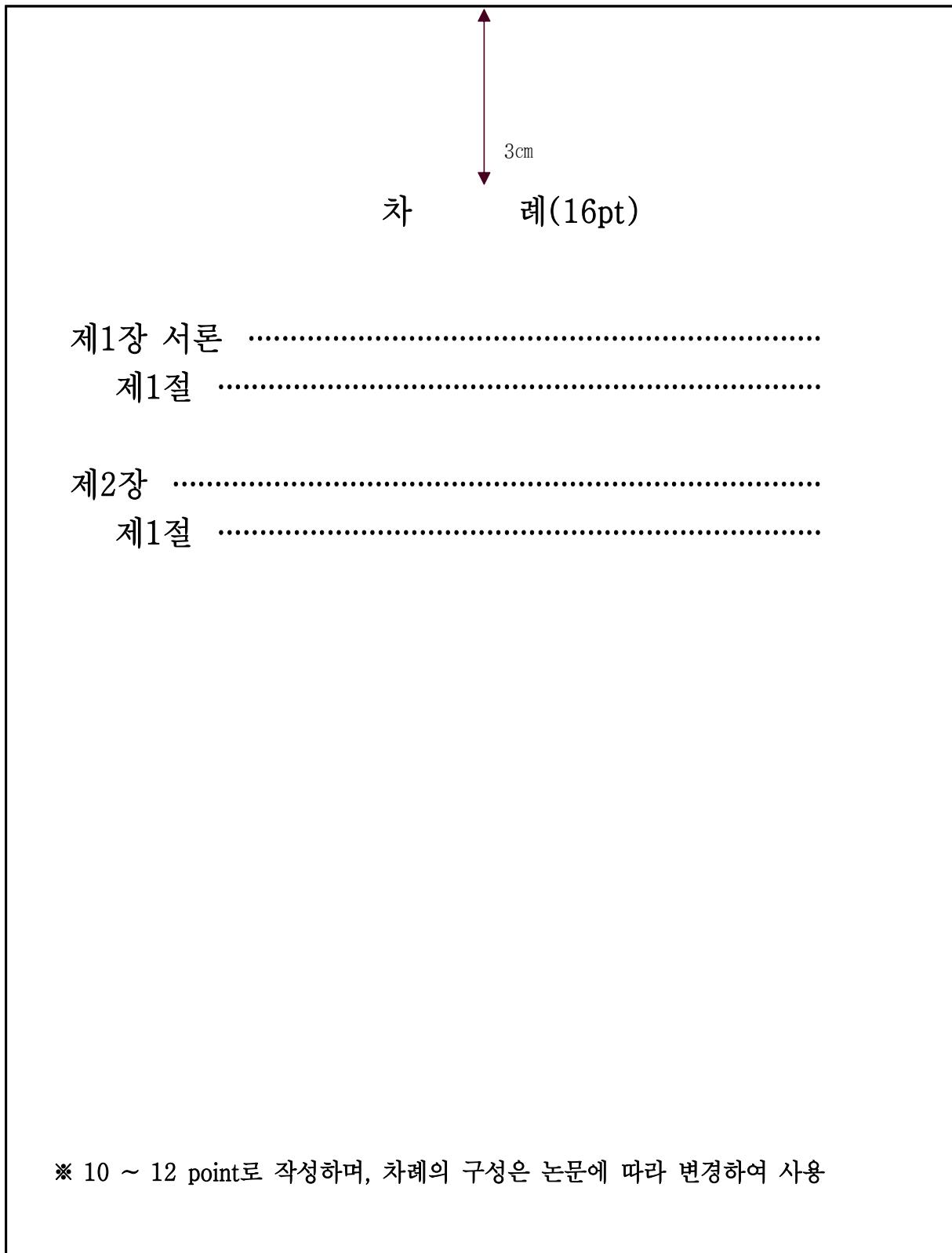
(3) 규격 3호(속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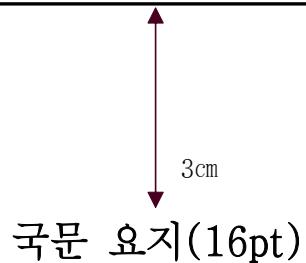
(4) 규격 4호(인준서)



(5) 규격 5호(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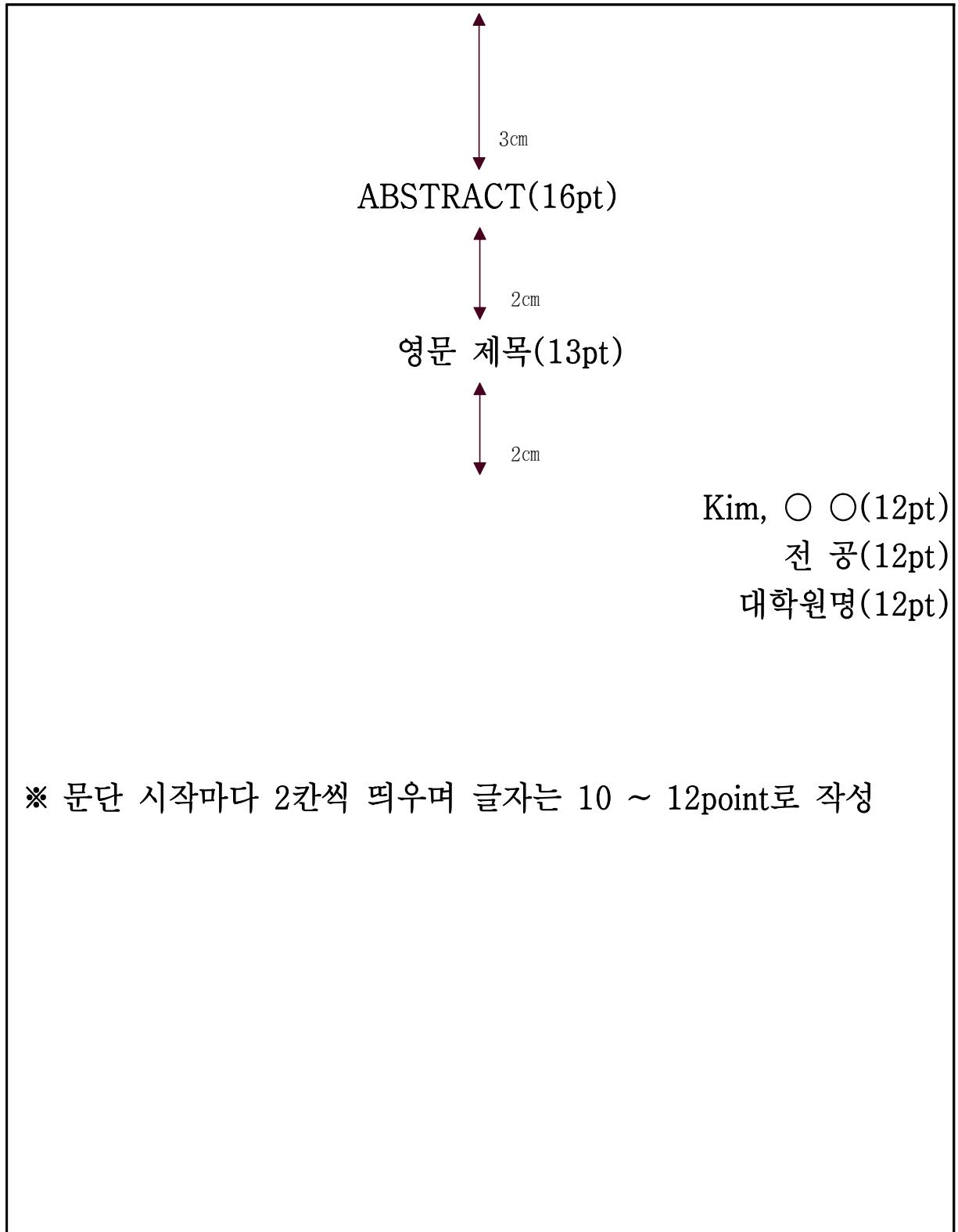


(6) 규격 6호(국문요약문)



※ 문단 시작마다 2칸씩 띄우며 글자는 10 ~ 12point로 작성

(7) 규격 7호(영문요약문)



※ 문단 시작마다 2칸씩 띄우며 글자는 10 ~ 12point로 작성

(8) 규격 8호(본문)



제 1 장 서 론(16pt)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3pt)

※ 문단 시작마다 2칸씩 띄우며 글자는 10 ~ 12point로 작성

[별표 3] 수당 지급 기준 <개정 2025.05.06.>

구 분	금 액	비 고
논문심사비	100,000원/1인	심사위원 1인당 심사료
종합시험 출제 및 채점	50,000원/과목	
외국어시험	출제	100,000원/인 출제위원 1인당
	채점	10,000원/인 학생 1인당